

동사연 정 관

(사)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이 법인은 「사단법인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」(이하 '연구소')라 한다.

제2조 (사무소와 분 사무소)

연구소의 사무소는 전남 순천시에 두고 동부권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3조 (목적)

연구소는 전남 동부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적 정의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실천방안을 연구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를 이룩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.

제4조 (사업)

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업을 한다.

- 1) 각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추진
- 2) 각종 조사 및 통계업무
- 3) 순천포럼 개최
- 4) 교육·출판위원회를 통한 각종 간행물 발행
- 5)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 원

제5조 (자격)

- 1) 회원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- 2) 회원은 총회에 참가 의결권을 가지며,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3) 특별회원은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정한다. 단,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.

제6조 (자문위원)

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위촉한다.

제7조 (연구위원)

연구위원은 이사회에 의해 위촉되며, 해당 위원회의 연구사업을 전담한다.

제8조 (회원의 의무)

연구소의 모든 회원은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, 협조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 (회원자격의 상실)

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- 1) 연구소의 해산
- 2) 탈퇴
- 3) 사망
- 4) 제명

제3장 임원 및 직원

제10조 (구성과 정수)

- 1) 이사는 실행이사와 후원이사로 구분하고, 각각 40인 내의 실행이사와 후원이사를 둔다.
- 2) 연구소장, 부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.
- 3) 후원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제외한 회원으로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- 4) 이사장, 부이사장, 총무이사, 각 위원회 위원장을 두며 겸직할 수 있다.
- 5) 감사는 2인을 둔다.

6) 고문은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제11조 (선임 및 임명)

- 1) 이사와 감사는 1년 이상 활동한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.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.
- 2) 이사장,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.
- 3) 총무이사, 소장, 부소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.
- 4)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.
- 5) 사무국장은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6) 이사장, 연구소장은 당적을 갖거나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.
- 7) 모든 이사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, 선거개시일 1개월 전까지 이사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- 8) 고문은 연구소의 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.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추대한다.

제12조 (직무)

- 1)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.
- 2)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) 총무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관리하고 연구소의 재정현황과 이사회 의결사항을 점검하여 매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4)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업을 관할하며 매월 이사회에 해당 위원회의 사업을 점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.
- 5) 포럼위원장은 포럼운영을 총괄한다.
- 6) 이사는 1개 위원회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되어,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- 7)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 -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
 - 결원된 이사, 기타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
 - 재산취득 및 처분, 기타 주요결정 사항

8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일
-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, 날인하는 일
-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,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(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)
-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,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이사가 공익법인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 그 이사에 대한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9) 교육·출판위원회는 지역과 전망, 기타 부정기간행물의 발간을 담당한다.

10)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통괄 집행한다.

11) 연구 부소장은 연구소장을 도와 통상업무를 처리하고 연구소장의 결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 (임원의 임기)

- 1) 이사장, 부이사장, 총무이사, 감사, 위원회 위원장, 소장, 부소장 등 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2) 임원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되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3)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.
- 4) 이사는 제명, 사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된 것으로 본다.

제14조 (사무부서)

- 1) 연구소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- 2) 연구소에 상근하는 사람에게 월정액의 연구비 및 급여를 지급한다.

제4장 회 의

제15조 (회의의 종류)

- 1)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,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로 한다.
- 2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- 3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제16조 (총회)

- 1) 구성 : 총회는 연구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2) 소집 : 정기총회는 년 1회, 3월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할 때,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3) 의결사항 : 정관의 변경, 연구소의 해산, 임원의 선출,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서의 승인,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4) 공고 : 정기총회를 소집할 때 이사장은 적어도 개최 5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, 장소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.

제17조 (이사회)

- 1) 구성 : 이사 회의는 이사로 구성한다.
- 2) 소집 : 정기이사회는 매월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3) 의결사항 : 이사회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,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4) 공고 : 이사회를 소집할 때 이사장은 적어도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, 장소를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한다.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18조 (운영위원회)

- 1) 구성 : 운영위원은 이사장, 부이사장, 총무이사, 소장, 부소장, 각 위원회 위원장, 사무국장 으로 구성한다. 단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다른 연구위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2) 소집 :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매월 정기이사회 이전에 1회 이상 소집한다.

3) 협의사항 :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안건 기타 연구소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하여 협의한다.

제19조 (위원회)

1) 구성 : 위원회는 해당 이사와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사업별로 책임이사를 둔다.

2) 소집 : 위원장이 매월 1회 이상 소집한다.

3) 의결사항 :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며, 매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20조 (의결정족수)

1)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2)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.

제21조 (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권의 위임)

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,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5장 자산 및 회계

제22조 (재산)

1)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규정한다.

2) 기본재산은 연구소의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한다.

3)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
4)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문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또는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 기본재산은 첨부된 재산 목록과

같이 게재하여 관리한다.

제23조 (세입충당)

연구소의 세입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재원으로 충당한다.

- 1) 이사는 월 3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다.
- 2) 회원은 년 3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다.

제24조 (회계년도)

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5조(예산편성)

연구소의 세입,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6조(감사)

감사는 년 1회 이상 업무 집행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
제27조(보수)

- 1) 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임원은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2) 직무수당은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6장 상별규정

제28조 (포상범위)

연구소의 목적달성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내외의 인사 및 단체에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29조 (징계)

회원이 다음의 각항에 해당될 때, 이사회의 의결로써 공개사과,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
- 1)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- 2) 정관 및 시행세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

- 3) 연구소의 목적수행을 저해하는 행위
- 4)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행위

제7장 보 칙

제30조 (해산)

연구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1조 (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)

- 1)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.
- 2) 청산 후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제32조 (정관변경)

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제33조 (사업보고)

연구소는 매 회계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며,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- 1)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- 2)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
- 3) 당해 년도 말 재산목록, 사업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

제8장 부 칙

제34조 (시행세칙)

- 1) 법인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- 2) 연구소 업무집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연구소장이 정한다.
- 3) 정관에 없는 사항은 시행세칙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.
- 4) 정관은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정 일 1995.03.29.

1차 개정 2003.12.

2차 개정 2007.01.17.

3차 개정 2011.02.

4차 개정 2021.12.31.

5차 개정 2023.02.21.